

공익법인 납세의무 개요



-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켜야 할 일**
 - 출연재산을 3년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
 -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1년내 30%, 2년내 60%, 3년내 90% 이상 직접공익목적에 사용
 -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1년 이내에 70%(80%) 이상 직접공익목적에 사용
 - 내국법인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5%(10%, 20%) 이하 취득 및 보유
 - 계열기업주식은 공익법인 총자산가액의 30%(50%) 이하 보유
 - 출연재산가액의 1%(3%) 이상 의무사용
 -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이사 및 임직원 취임제한
 - 그 밖의 지켜야 할 사항
-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등**
 -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
 -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
 -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
 -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
-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**
 - 출연재산보고서 등 제출의무
 -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
 - 장부의 작성·비치 의무
 -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
 -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
 - 전용계좌 개설·사용 의무
 -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 의무
 -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보관·제출
 - (세금)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

- 출연재산**
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얻은 재산
- 고유목적사업**
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

※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공익법인 신고 도움 정보

홈택스 공익법인 신고 도우미

- 공익법인 신고도움 서비스**
출연재산 보고 대상 공익법인에 세법상 의무사항과 관련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여 드립니다.
☐ 홈택스 > 신고납부 > 일반신고 > 공익법인보고서 제출 > 신고도움자료 확인

- 미리채울 서비스**
해당 공익법인이 직전연도에 출연재산 보고, 결산서류 공시한 사항 등을 자동으로 채워 보여 드립니다.

- 의무이행 여부 조회 서비스**
공익법인이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면 해당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, 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팝업창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홈택스 이용 방법

-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**
☐ 홈택스 > 신고납부 > 일반신고 > 공익법인보고서 제출
- 결산서류 등 공시**
☐ 홈택스 > 세금종류별 서비스 > 공익법인 공시 > 결산서류 등 공시
- 전용계좌 개설**
☐ 홈택스 > 신고납부 > 일반신고 > 공익법인 전용계좌개설
-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**
☐ 홈택스 > 세금종류별 서비스 > 공익법인 공시 >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
-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제출**
☐ 홈택스 > 신고납부 > 일반신고 >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

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운영

- 공익법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국 세무서의 「공익법인 전문상담팀」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.
☐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> 세금종류별 서비스 > 공익법인공시 > 공지사항



전국 어디서나 ☎ 126(국번없이)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을 한번에!

www.nts.go.kr



2021 공익법인에 유익한 세무정보 안내



공익법인 개요

공익법인이란?

- 종교, 교육, 복지 등 주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을 말합니다.
☞ 상증법 § 16①, 상증령 § 12
- 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는 시점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하며,
-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,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.
- 다만, 공익법인은 다음 연간 세무일정에 따라 세법상 여러 가지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.

연간 세무일정 (12월말 법인 예시)



월	의무사항(기한)	의무이행 대상
3월	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(3/31) (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)	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
	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(3/31) (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)	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
	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(3/31) (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)	직전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,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,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* 종교법인, 학교법인 제외
	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(3/31) (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)	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
4월	결산서류 등 공시(4/30) (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)	모든 공익법인(종교법인제외) *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공시 가능
	연간 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(4/30) (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)	· 기획재정부 지정·고시 공익법인 · 기획재정부 지정대상이 아닌 공익법인(종교단체 제외)
	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보고(4/30) (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)	
6월	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제출(6/30) (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)	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



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

출연재산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

- 출연재산**
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**3년 이내**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**전부 사용**하고, **이후 계속**하여 공익목적사업에 **사용**하여야 함
- 출연재산 매각대금**
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**1년 이내**에 **30%**, **2년 이내**에 **60%**, **3년 이내**에 **90%**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
- 출연재산 운용소득**
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**1년 이내**에 **70%***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
* 성실공익법인 80%
-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은 **매년 수익용 재산의 1%***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
* 발행주식총수의 10%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은 3%

주식의 출연·취득·보유 제한 등

-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**5%***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 할 수 없음
* 일반공익법인 5%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성실공익법인 10% (자선·장학·사회복지 목적 성실공익법인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20%)
- 계열기업의 주식은 공익법인 총자산가액의 **30%***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(성실공익법인 제외)
* 외부감사, 전용계좌 개설·사용, 결산서류 공시 이행시 50%

이사·임직원 취임시 준수사항

-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이사수의 **1/5**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으로 취임 금지

그 밖의 지켜야 할 사항

-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
- 특수관계인간 부당 내부거래 금지
-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 금지
- 공익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 등 귀속



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

1 출연재산보고서 등 제출의무

- 대상**: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
- 기한**: 사업연도 종료일부턴 **3개월** 이내 제출

2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

- 대상**: 모든 공익법인(종교법인 제외)
다만,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공시 가능
- 기한**: 사업연도 종료일부턴 **4개월** 이내 홈택스에 공시

3 장부의 작성·비치 의무

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, 공익사업 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고 관계 증명서류와 함께 사업연도 종료일부턴 **10년간 보존**

4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

- 대상**: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
- 기한**: 사업연도 종료일부턴 **3개월** 이내 제출

5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

- 대상**: 직전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,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(종교법인, 학교법인 제외)
- 기한**: 사업연도 종료일부턴 **3개월** 이내 감사보고서 제출

6 전용계좌 개설·사용 의무

- 대상**: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금액
- 기한**: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턴 **3개월** 이내 개설신고 변경 추가시 사유발생일부턴 1개월 이내 신고

7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의무

- 대상**: 회계감사, 결산서류 공시 대상 공익법인(의료법인, 학교법인 제외)

8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·보관·제출의무

- 대상**: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(5년 보관)
- 기한**: 사업연도 종료일부턴 **6개월** 이내 제출

9 (세금)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

공익법인 등이 (세금)계산서를 수취 또는 교부한 경우 세법상 기한까지 자료 제출

공익법인(구)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

신청대상 법인령§39①1호바목

- 주무관청 허가받은 비영리법인(민법 § 32), 비영리외국법인
- 사회적협동조합(협동조합기본법 § 85)
- 공공기관(공기업 제외),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

※ (주의) 다음 단체는 그 동안 지정추천 없이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었으나, '21년부터 지정추천 절차에 따라 지정받아야 함

- 1 '18.2.13.전에 인·허가 받은 학술연구·장학·기술진흥·문화예술·환경보호단체
- 2 '18.2.13.(구)법인칙 별표6의2로 지정된 단체
- 3 '18.1.1.(구)법인칙 별표6의7로 지정된 단체 중 지정기간 만료된 단체

지정절차



신청방법

- 전자신청**: 인터넷「홈택스(www.hometax.go.kr)」로 신청
☐ 홈택스(공인인증서 로그인) ▶ 신청/제출 ▶ 신청업무 ▶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
- 우편/방문**: 관할세무서에 추천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
신청기간

구분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신청기간	'20.10.11~'21.1.10	'21.1.11~4.10	'21.4.11~7.10	'21.7.11~10.10
지정·고시	'21.3.31	'21.6.30	'21.9.30	'21.12.31

'21년에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, '21.10.10.까지 신청하여야 함

지정요건

- 1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
가 |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할 것 등
나 |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
다 |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
- 2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에 국민권익위/국세청/주무관청 홈페이지 중 1개 이상 연결
- 3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(해당법인 또는 그 대표자)
- 4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턴 3년이 경과하였을 것

구비서류

- 1 추천신청서(법인칙 별지 제63호의5 서식)
 - 2 정관
 - 3 법인설립허가서·법인등기사항증명서*(말소포함, 1개월내 발급)
* (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)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로 대체 가능
 - 4 최근 3년간 결산서*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
* (설립 후 1년미만 법인)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·지출내역서 가능
 - 5 향후 3년(재지정신청은 5년)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
 - 6 의무이행준수서약서(법인칙 별지 제63호의6 서식)
 - 7 공익활동보고서
- 신규 신청시: ①-⑥ / 재지정 신청시: ①-⑤, ⑦

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 의무사항

의무이행 대상 법인령§38⑧⑨, §39⑤⑥

- 기획재정부 지정·고시 공익법인
법인령 § 38⑧, ⑨, 법인령 § 39①1호바목
- 기획재정부 지정대상이 아닌 공익법인*(종교단체 제외)
법인령 § 39①1호가~라목
* '18.2.13. 전에 인·허가 받은 학술연구·장학·기술진흥·문화예술·환경보호단체는 의무이행 대상임

의무사항

-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(기획재정부 지정·고시 공익법인)
가 |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할 것 등
나 |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
다 |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
 -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할 것 등
 -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단체의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각각 공개
 -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(해당법인 또는 그 대표자)
 -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 직접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
 -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
 -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것
 -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
- 기획재정부 지정·고시 해외한국학교, 전문모금기관은 ③, ⑤만 해당**

- 의무이행 여부보고**
매년 의무이행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턴 4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보고

의무불이행 시 불이익

- 기획재정부 지정·고시 공익법인 → 지정취소
- 기획재정부 지정대상이 아닌 공익법인 → 2회 이상 의무불이행 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공개



기타 안내사항

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점검 기관 변경

'21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의무이행점검 기관이 주무관청에서 국세청(관할세무서)으로 변경

☞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
(www.nts.go.kr ▶ 국세청고지내 ▶ 법인신고안내 ▶ 공익법인)